

창업드림학교 운영규정

(제정 2013. 4. 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(예비)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의 전과정을 일괄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창업드림학교(이하 “드림학교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3.>

제2조(사업) 드림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5.4.3.>

1. 드림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2. 입소생 선발·평가·퇴출·관리
3. 입소생 교육, 창업준비공간 지원, 사업비 지원·관리, 기술지원, 창업코칭, 연계지원
4. 책임멘토 선발·평가·관리
5. 그 밖에 드림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드림학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드림학교 산하에 창업지원부, 교무부를 둔다. <개정 2015.4.3.>

제4조(드림학교장) ① 드림학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겸직한다. <개정 2015.4.3.>

② 드림학교장은 드림학교를 대표하며 드림학교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4.3.>

제5조(본부장) ① 드림학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창업사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드림학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4.3.>

② 본부장은 드림학교장의 유고시에는 드림학교장의 업무를 대행하며, 평상시 드림학교의 일상 업무를 관할한다. <개정 2015.4.3.>

제6조(행정인력) ① 창업지원부에는 부장을 두며, 부장은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이 겸직한다. 부장은 드림학교장과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책임멘토와 매니저를 통솔한다. <개정 2015.4.3., 2019.9.1.>

② 입소생들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교무부에 책임멘토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③ 입소생들의 교육 및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로 갈음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드림학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4.3.>

1. 드림학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드림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드림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재정) 드림학교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본교자체 지원금, 용역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3.>

제9조(회계연도) 드림학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 <개정 2015.4.3.>

제10조(운영세칙) 드림학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개정 2015.4.3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